

## 2026년도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사업 신규지원대상 과제 공고

2026년도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사업의 신규지원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사업내용
  - 1-3. 지원대상 과제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산정시 유의사항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3-2.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신청자격
  - 4-2. 지원 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감점사항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안전하고 성공적인 원전해체를 위한 방사선환경 실증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 1-2. 사업내용

-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작업로봇의 방사선 영향으로 인한 장비 고장, 오작동 시 발생하는 피폭 및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환경 내 작동신뢰성 실·인증체계 구축 지원
- (현장형 해체 전문인력 양성) ‘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예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통해 원전해체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효성 있는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1-3. 지원대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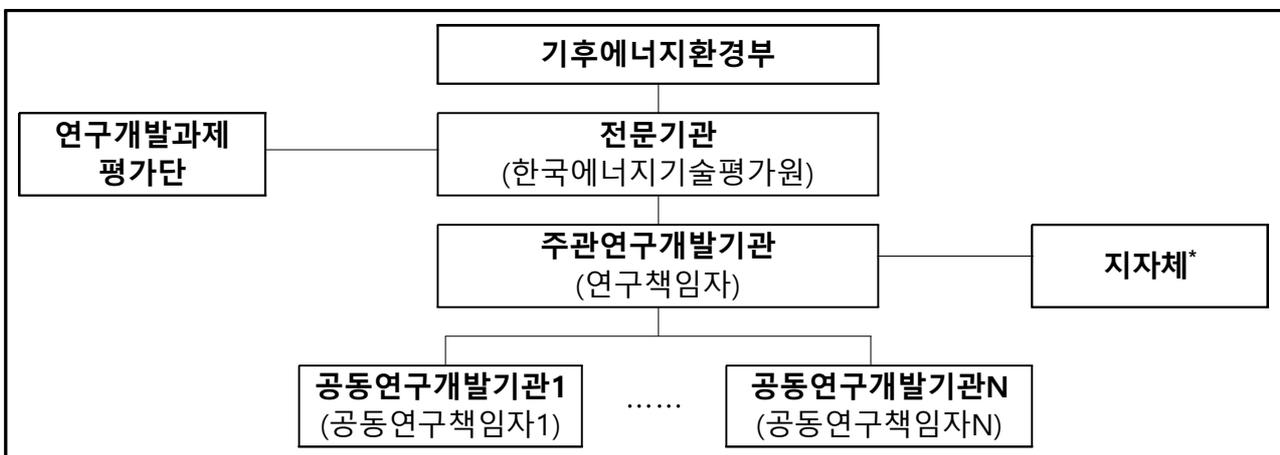
-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사업
  - 2개 과제, 총 146억원 내외 지원 ('26년 29.3억원 이내)

과제 제안요구서(RFP)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유형	'26년 지원예산	비 고
첨단 해체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 구축	비영리기관 (원전해체 관련 실증기관)	비R&D	25.2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안전관리형 과제
원전해체 장비 실습 교육을 통한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 기반 구축	비영리기관 (원전해체 관련 실증기관)	비R&D	4.1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지원예산은 예산확보 과정, 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간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수행기간, 과제 세부내용 및 기타 지원조건은 별도 제안요구서(RFP)\* 참조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방사선환경 실증센터 구축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RFP)”

# 2. 사업추진체계



\* 지자체 :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등 지원(현금, 현물 지원 가능)

###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산정시 유의사항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첨단 해체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 구축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li> <li>- 주관연구개발기관 : 비영리기관(원전해체 관련 실증기관)</li> </ul>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협약 체결</li> <li>- 총 수행기간 : 2026.04.01.~2029.12.31.(45개월)</li> <li>○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li> </ul>
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지자체/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li> <li>○ 실증센터 구축 예정지 소재 지자체부담연구개발비 필수 출연(시설·장비비 30% 이상 매칭)</li> <li>○ 건설비 100% 민간매칭</li> <li>○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조, 제23조 적용</li> <li>○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4조 제2항 [별표4] 적용</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료 비징수, 안전관리형 과제</li> </ul>

- 원전해체 장비 실습 교육을 통한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 기반 구축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li> <li>- 주관연구개발기관 : 비영리기관(원전해체 관련 실증기관)</li> <li>- 지자체 연계 비영리기관 참여 필수</li> </ul>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협약 체결</li> <li>- 총 수행기간 : 2026.04.01.~2029.12.31.(45개월)</li> <li>○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li> </ul>
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지자체/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li> <li>○ 지자체 연계 비영리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매칭</li> <li>○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조, 제23조 적용</li> <li>○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4조 2항 [별표4] 적용</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료 비징수</li> </ul>

### 3-2.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적용

## 4. 신청자격 등

### 4-1. 신청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32호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9조(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호부터 제8의5호,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지자체

### 4-2. 지원 제외 처리기준

#### □ 다음의 경우는 사전지원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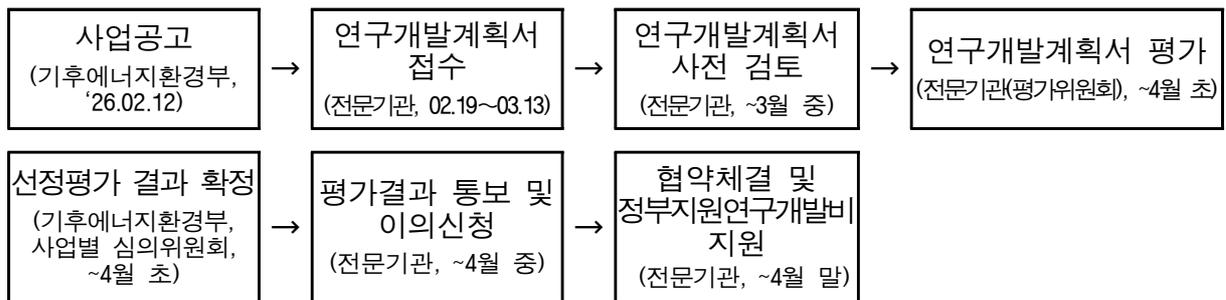
-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既)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 과제로 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협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공통운영요령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

## 5.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5-2. 평가기준(감점사항 포함)

###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수행전략(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전략의 적합성</li> <li>■ 수행일정 및 예산편성 적정성</li> <li>■ 지자체 참여의 적극성</li> </ul>
수행계획(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방법의 타당성</li> <li>■ 수행기관의 기술·지식 능력</li> <li>■ 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li> </ul>
기관 일반사항(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업무 수행 및 운영 실적</li> <li>■ 인력투입 및 배치의 적절성</li> </ul>

\*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행전략, 수행계획 및 기관 일반사항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수행포기된 과제의 귀책대상자(제재대상자)
  -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 관리지침」 등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사업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6.02.12.(목) ~ 03.13.(금) 18:00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6.02.19.(목) ~ 03.13.(금) 18:00 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연구개발과제 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1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2 참조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http://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담당부서	과제 제안요구서(RFP)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연락처 (☎ 02-3469-00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8413	8384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 붙임1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류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파일 업로드(HWP)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출 * 기관(기업)별 날장 제출 가능
4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6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제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7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	신청 요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9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붙임2 기타 유의 사항

###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과제는 비R&D 과제로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 수(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음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 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외주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 기술 라이선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선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금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방사선환경 실증센터 구축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 □ 안전관리 비용 확보

-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또는 컨설팅, 안전관련 소모품 구매 등의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

#### □ 필수참여 기관

- 원전해체 장비 실습 교육을 통한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 기반 구축 과제를 위해, 지자체 연계 비영리기관 필수 참여
  -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지방비 매칭
  - ※ 지자체 참여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공문 제출 필수

### 붙임3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정의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대상 여부

- 기술개요서(제안요구서) 참조\*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http://www.ketep.re.kr))에 게시

####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유의사항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처리 가능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지원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수행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